

광주지방법원 2017. 6. 30 선고 2016가단502024 판결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 고 종단A(정정전 : A)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7. 6. 9.

판결 선고 2017. 6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광주 북구 C대 628㎡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8.12. 31. 접수 제214490호로, 광주지방법원 2011. 5. 24. 접수 제98600호로 한 순위번호2-1번, 2-2번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종단 A은 별지 목록 ①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②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05. 8. 17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. 8.25. 접수 제482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. 5. 10.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. 12. 31. 접수 제214490호 종단 A의 명칭을 B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, 2011. 5. 19. B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D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E로 변경하는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(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모두 합하여 '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'라고 한다)가 각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는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살피건대,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,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5387판결 등 참조). 또한 단체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, 조직,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12. 9.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해원상생의 F를 총지로 하고, 인간개조,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, 구제창생, 보국안민,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정관을 갖고 있고,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G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,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, 구성원의 가입,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

존속되는 등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또 피고는,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총유재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소제기에 관한 원고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민법 제275조,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,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갑 제9호증, 갑 제20호증의 2,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정관 제19조 제4호에 "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"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,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. 8. 12. '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에게 편취당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국 각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을 승인'하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의 대표자 H은 종단 A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, I 종단의 분열을 기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A에서 피고로 명의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. 따라서 이 사건 각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60903판결 등 참조).

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지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

종단 A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1, 2호증, 을 제2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종단 A은 2007. 3.경 그 명칭을 B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, 현재의 원고는 기존 종단 A과는 달리 2015. 11.경 피고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별도로 조직한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보라

[별 지]

부동산목록

1. 광주광역시 북구 대 628㎡.

2.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

건평 59.72㎡

부속건물

세멘벽돌조 스테이트즙 평가건 주택

건평 70.50㎡

세멘벽돌조 스테이트즙 평가건 창고

건평 7.40㎡. 끝.

